

연구보고서 2013-1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일원화 방안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중심으로—

2013. 8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진

이 보 라 책임연구원

홍 성 진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분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상대적 약자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상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시장 참여자들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재하도급자, 자재 및 장비대여업자, 건설기계업자 등을 위해 제정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관련 지급보증들의 일원화와 포괄보증 대상범위 조정 및 운영 등의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생산 참여자의 안정적인 활동의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여, 저가 하도급이 방지되는 등 공정한 건설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2013년 8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노재화

1. 서론

- 하수급인, 자재 및 장비업자와 같이 권리 확보에 취약한 대상의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임금지급보증제도(시행 예정) 및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임금지급보증을 포괄대금지급보증으로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2.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수급인은 물론 하수급인이 계약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
- 이러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미국의 밀러법(Miller Act)의 「임금 및 자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도입한 것임

요 약

- 그런데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전년도 낙찰율의 하위 5% 범위)이하로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그 적용대상의 협소함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제 적용대상 공사건수가 1건도 없는 실정임

3. 하도급대금관련 개별보증 분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의 저조,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의 부적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① 보증대상범위의 과다, ② 보증기간의 과다책정, ③ 보증 면제대상의 협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임금지급보증(안)은 하수급인의 보증서를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동일한 대상에 개별보증과 포괄보증이 중복 적용될 수 있어 제도 운영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각각의 보증에 대한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4.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 방안

(1)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일원화 방안

-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하도급대금관련 지급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 2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향후 임금지급보증)을 하나의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로 통합·운영하여야 함

(2)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확대 방안

①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 범위 확대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용대상을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함

② 포괄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적용기준 마련

-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공사원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함

③ 보증 면제대상 조정

-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면제 대상인 회사채 평가 A 이상인 업체도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함

④ 보증금액 및 보증비율 조정

- 현행 도급금액 20%의 일괄적인 보증 기준이 아닌 공사기간 및 기성주기에 따른 보증범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 경우 미국의 밀러법(Miller Act)과 같이 공사금액에 따라 보증범위를 차등화 하도록 함

차 례

1. 서 론	1
2.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고찰	5
2.1 국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고찰	5
2.1.1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용 범위	6
2.1.2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	8
2.2 미국의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 고찰	14
2.2.1 미국의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 분석	14
2.2.2 미국의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 종합	24
2.3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의 법적 타당성	26
3. 하도급대금관련 개별보증 분석	31
3.1 단계별 건설공사 보증	31
3.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35
3.2.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현황	35
3.2.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문제점	39
3.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43
3.3.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현황	43
3.3.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문제점	48
3.4 임금지급보증	51
3.4.1 임금지급보증의 현황	51
3.4.2 임금지급보증의 문제점	57

3.5 총 합	58
4.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활성화 방안	61
4.1 포괄대금지급보증의 일원화 방안	61
4.2 포괄대금지급보증의 확대 방안	63
4.2.1 적용대상 확대	63
4.2.2 포괄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적용기준 마련	71
4.2.3 보증 면제대상(회사채평가 A 이상) 조정	77
4.2.4 보증금액 및 보증비율 조정	79
5. 결론	81
참 고 문 헌	87
부 록	89

표 차례

<표 2-1> 하도급대금지급의 대상 및 개별 보증금액	8
<표 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0
<표 2-3>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대상	12
<표 2-4> 밀러법(Miller Act)의 이행보증과 지급보증 설명	17
<표 2-5> 공사금액별 보증 범위	18
<표 2-6> 미국 10개 주(州)별 Little Miller Act 비교	23
<표 3-1>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33
<표 3-2> 건설공사 단계별 보증의 적용	34
<표 3-3> 하도급 공사 지급보증서 교부율	40
<표 3-4>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41
<표 3-5> 100대 건설업체 중 구조조정 현황	42
<표 3-6> 업종별 임금 체불 현황	51
<표 3-7> 건설업 임금 체불 현황	52
<표 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임금보증제도	53
<표 3-9>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보증 비교	59
<표 4-1> 조달청의 연도별 공공공사 발주 현황	64
<표 4-2> 연도별 3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공사 발주 현황	65
<표 4-3> 연도별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주공종별	65
<표 4-4> 연도별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계약방법별	66
<표 4-5> 연도별 전체 공공공사중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5% 공사진수	67
<표 4-6> 연도별 전체 공공공사중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10% 공사건수	68
<표 4-7> 포괄대금지급보증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70
<표 4-8> 포괄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제1안)	74
<표 4-9> 포괄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제2안)	76
<표 4-10> 포괄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조정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78

그림 차례

[그림 2-1] 포괄보증과 개별보증	7
[그림 2-2]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1
[그림 2-3] 밀러법 보증범위	20
[그림 3-1]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	45

- 최근의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급물량 감소로 인하여 수급인의 저가입찰 등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건설계약의 채산성과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은 하도급계약으로 전가되어 하도급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의 미지급·체불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하도급자, 자재 및 장비업자와 같이 권리 확보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보호 장치 강화가 필요한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임금지급보증제도(시행 예정)의 개별보증과 각각의 개별 보증을 포괄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수급인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등을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도록 1994년 4월 1일 시행되었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업자의 고의부도·잠적 등으로 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2013년 6월 19일 시행되었음

- 임금지급 보증의 경우, 2013년 7월 16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통해 건설공사 사업주에게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등의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음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건설업체(수급인 및 하수급인) 부실 및 부도시 건설공사 참여자인 (재)하도급자, 자재제작·납품업자, 장비대여업자 등의 대금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로써, 2009년 3월 26일 범정부차원에서 수립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1년 5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도입되어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됨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미국의 밀러법(Miller Act)의 「임금 및 자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밀러법(Miller Act)의 「임금 및 자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노무 및 자재 공급자,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노무 및 자재 공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기관이 하도급자 및 임금과 자재 공급자 모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제도임
- 그러나 이러한 건설공사대금 관련 지급보증제도는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 적용범위, 보증기간, 지급보증 면제대상, 보증 건수, 수수료 및 보증서 교부율 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어, 관련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율이 미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범위가 넓어 하도급자를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함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건설보증범위의 과도한 설정, 건설기계 대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증기간 및 지급보증 면제대상 설정과 과도한 보증 건수로 인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임금지급보증은 하수급인이 보증서를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및 보증서 교부율의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낙찰률이 현저히 낮은 공사(최저가 낙찰공사의 전년도 낙찰률 하위 5% 이하)로 한정해 적용대상 공사가 너무 협소하여 실효성이 없고, 포괄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적용기준의 미비, 보증 면제대상의 비현실성, 보증금액 및 보증비율의 협소성 등 전반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당공사건수가 2013년 6월 현재 적용대상 공사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임
- 결국 이러한 건설공사대금 관련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은 각각의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뿐 아니라 1건의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임금지급보증 등 여러 개의 건설공사대금 지급관련 보증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행정력 및 재정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른 보증제도 즉, 포괄대금지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2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포괄대금지급보증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중심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태 및 미비점을 파악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하도급대금관련 지급보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포괄보증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및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1 국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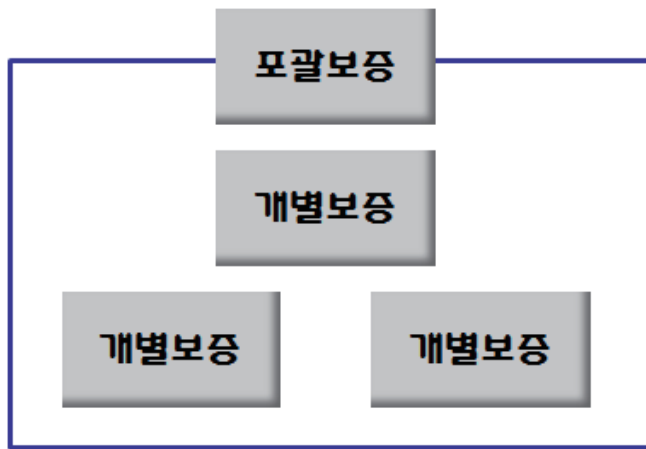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 외에 2차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른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제68조의2)
- 포괄대금지급보증제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수급인은 물론 하수급인이 계약한 하도급대금, 장비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
- 이는 하수급인 외에 2차 하수급인, 장비 대여업자 및 자재 공급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인의 지나친 저가 투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개정(2011. 5. 24: 법률 제10719호)을 통하여 도입되었음
- 종래 「건설산업법」에서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고 동시에 하수급인은 수급자에게 시공보증을 하는 것까지만 규정되어 있었음

- 이에 따라 하수급인과 계약한 2차 하수급인, 장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등은 보증제도를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수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 본 절에서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 중심의 건설공사 지급보증 일원화 방안의 이론적 전제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해석을 통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용범위, 운영 등에 관한 개요를 살펴보고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의 운영 실태를 고찰하고자 함

2.1.1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용 범위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전년도 낙찰율의 하위 5% 범위)이하로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한 공사일 것
 - ②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통하여 결정하는 공사일 것(「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 ③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¹⁾하는 낙찰률)로 도급받은 경우일 것
-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① 하도급 대금,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림 2-1] 포괄보증과 개별보증

1) <표1>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04호)

공사구분	낙찰률(%)
토목(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65.553
건축(입찰공고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69.103
기타공사(최저가 공사의 전체 평균낙찰률 기준 하위 5%)	67.198

2.1.2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 보증대상 및 금액

-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하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포괄대금지급보증 발급은 원도급계약 체결 시 보증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짐
 - 다만, 다음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의 합계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하여야 함

<표 2-1>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및 개별 보증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보증 금액
①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② 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③ 하수급인이 재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²⁾ 에 따른 하도급대금 ④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div>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text{월수} \times 2$ </div>
⑤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⑥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4개월 동안의 건설기계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위 <표 2-1>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³⁾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 서식에 따라 계약내용(변경 또는 해지의 경우 포함)을 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통보하는 경우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제출을 같음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준용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은 <표 2-2>와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3) <http://www.kiscon.net>

<표 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956호

1. 적용기준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요율

공사규모	요율	
50억원 미만	0.070%	
50억원 ~ 100억원 미만	0.069%	
100억원 ~ 300억원미만	0.064%	
300억원 이상	건축	0.058%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토목(산업설비 포함)	0.058%
턴키대안공사		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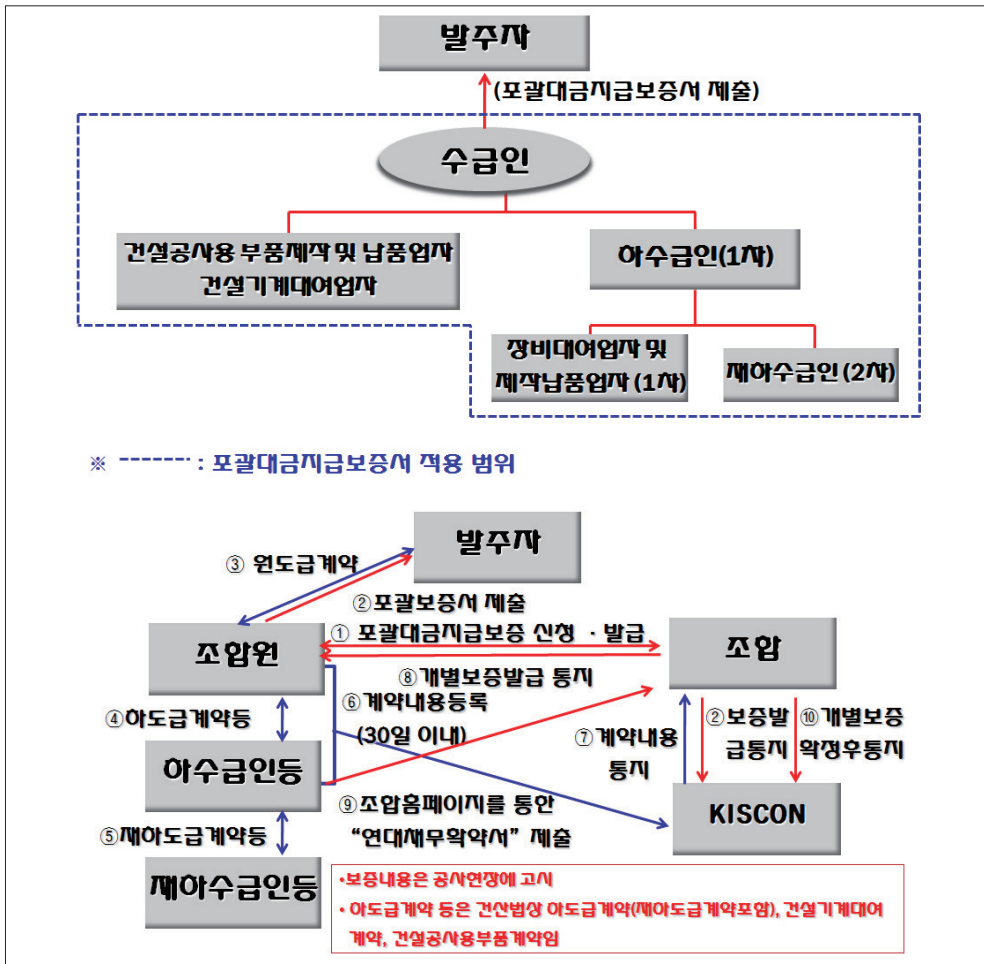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 또한 상기 <표2-2>와 같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한편,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표 2-1>의 ④, ⑤, ⑥의 계약내용 및 이에 따른 대금 지급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야 함

- 이와 관련하여 2013. 6. 19부터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별도로 지급보증하여야 함

- 다만,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간주됨

○ 이러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 방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2]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4)

- 다만 포괄대금지급보증 의무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아래의 <표 2-3>의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음

<표 2-3>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 대상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⁵⁾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p>수급인이 ②의 ㉠~㉢의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급인이 재하도급한 계약의 하도급 대금, ㉡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위반시 시정명령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2013. 6. 19 시행,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1576호) 제81조 및 제82조)

4) 두 번째 그림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조합원설명자료를 인용하였음.
 5)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업을 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 보증해제 및 취소

- 포괄대금지급보증은 ① 개별보증이 모두 해제된 후, 포괄보증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때, ②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접수된 때 전부 해제할 수 있음
- 또한 ① 포괄보증이 추가로 발급되고, 개별보증이 해제되는 경우 당초 포괄보증의 한도에 여유가 있는 경우, ② 포괄보증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개별보증확정이 되지 아니한 잔여 보증금액, ③ 당해 포괄보증금액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채권자의 공문 등 문서(사본 포함)가 접수된 때 일부 해제할 수 있음
- 포괄대금지급보증은 개별보증이 확정된 후에는 포괄보증 취소가 불가하지만 ① 포괄보증 발급 후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발주자 및 하수급인 등과 합의한 경우, ② 조합이 확정·공시한 모든 개별보증에 대해 보증채권자로부터 “개별대금지급보증취소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

2.2 미국의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 고찰

2.2.1 미국의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 분석

- 미국의 경우 보증의 주목적은 보험과 같이 발생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완료하는데 있음. 따라서 발주자의 건설공사의 안정적인 완료를 위해서는 보증회사의 보증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건설보증은 건설 리스크에 대해 발주자를 보호하는 리스크 분배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건설보증은 크게 입찰보증(bid bond),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지급보증(payment bond)의 3가지로 구분됨. 입찰보증은 입찰단계부터 계약작성단계까지를 보증하며, 이행보증은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지급보증은 하도급대금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중에서 이행보증과 지급보증은 동시에 적용되며, 밀러법(Miller Act)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이중 하도급대금, 임금 및 자재대금보증의 밀러법(Miller Act)을 고찰하도록 함

(1)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호

- 미국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크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급보증 방식이 구분됨. 민간공의 경우 Mechanic's Lien을 이용하여 채권자가 당해 공사 물건을 압류하여 미지급한 공

사금액의 대체가 가능하지만, 공공공사의 경우 이러한 압류가 불가능하여 Miller Act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 Mechanic's Lien이란 노무나 자재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치나 조건이 증가했을 때, 이를 제공받은 자(발주자)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무 및 자재 공급자 또는 조건이 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부동산 및 재산에 대한 우선적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여기서 주목할 점은 Mechanic's Lien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자, 2차 하도급자, 공급자(노무 및 자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일정한 지급 조건이 성립하면 하도급자, 2차 하도급자, 공급자(노무 및 자재)가 당해 공사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임
- 즉, Mechanic's Lien은 직접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다했더라도 건설공사의 하부단계에서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
- 권리 및 절차상 이러한 유치권 설정과 유사한 제도가 캐나다의 Quebec, Newfoundland, Labrador와 New Zealand , Mexico 등과 같이 미국 이외 여러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 중에 있음

(2)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호

- Mechanic's Lien은 민간공사에서만 작동되며, 공공공사에서는 이러한 유치권이 적용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공공공사의 하도급자, 자재 및 노무 공급자, 2차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였으며, 공공공사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 속하면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을 밀러법(Miller Act)이라는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의무화하였음
- 밀러법(Miller Act)은 10만 달러 이상 연방정부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및 수선의 경우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과 지급보증(Payment Bond)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여⁶⁾ 연방정부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는 주정부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칭 작은 밀러법(Little Miller Act)이라 칭함

① 연방정부의 하도급대금 보호(Miller Act)

- Miller Act는 1935년에 도입되어 Mechanic's Lien을 사용할 수 없는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함. 원도급자의 채무 불이행의 위험으로부터 노무 혹은 건설자재 제공자와 하도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임

6) Miller Act TITLE 40 > SUBTITLE II > PART A > CHAPTER 31 > SUBCHAPTER III > § 3131. Bonds of contractors of public buildings or works 원문 참조, 밀러법은 \$100,000 이상의 연방정부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이행보증(Performance Bond)와 지급보증(Payment Bond)을 의무화한 법률임

- 밀러법은 10만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공사의 모든 공공건물 및 공공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 변경, 수선을 할 때 발주처에 의무적으로 공사이행보증과 지급보증을 제출해야함
- 밀러법의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은 발주처에게 공사 진행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이며, 지급보증(Payment bond)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노무 및 자재 공급자,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노무 및 자재 공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처에 임금과 자재 공급자 모두의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임

<표 2-4> 밀러법(Miller Act)의 이행보증과 지급보증 설명

구분	이행보증(Performance Bonds)	지급보증(Performance Bonds)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연방정부 공사에 해당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공사에 해당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담당 공무원의 판단 하에 공사 진행에 적절한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와 계약 체결한 노무 및 자재 제공자, 하도급자뿐만 아니라 원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차 하도급자, 노무 및 자재 제공자의 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하며, 원도급자는 이에 대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함 (단, 노무 및 자재공급자에게 하도급 받는 하도급자, 3차 하도급자 보증대상에서 제외)

- 보증 적용범위는 계약금액이 100만 달러 이하의 공사는 계약금액의 50%를 보증하고,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경우 40%, 5백만 달러 이상인 모든 공사의 경우 250만 달러를 보증함(<표 2-4> 참조)

<표 2-5> 공사금액별 보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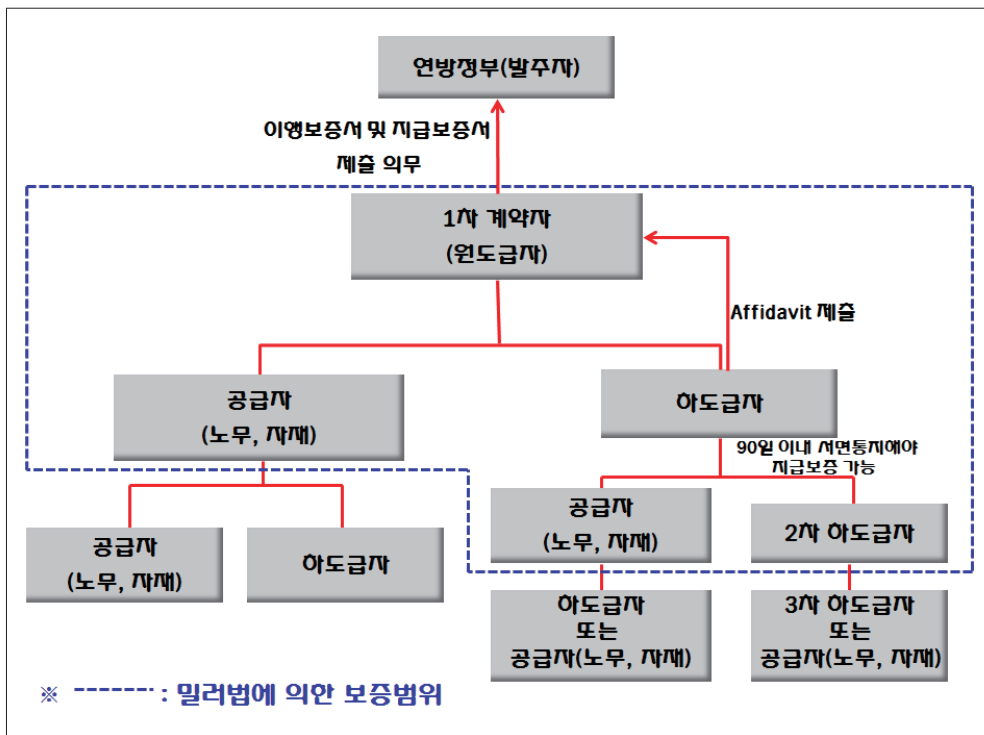
공사계약금액	Payment Bond 범위
\$100,000~\$1,000,000	공사계약금액의 50%(\$50,000~\$500,000)
\$1,000,000~\$5,000,000	공사계약금액의 40%(\$500,000~\$2500,000)
\$5,000,000 이상	\$2,500,000

- 지급보증의 대안으로 공사계약금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연방조달규정(FAR)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지급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
 -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은 15만 달러를 넘는 공사에 대해 보증을 요하고 있으며, 공사계약금액 3만 달러~15만 달러에 해당하는 공사는 계약담당관의 결정 하에 Payment Bond를 대신하는 다른 보증방식이 적용됨. 즉, 미국은 3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이 적용되고 있음
- 이행보증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체결에 앞서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정부에 이행보증을 제출하면 이행보증이 개시되며, 지급보증도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에 앞서 계약자가 모든 노무 및 자재 제공자가 공사를 수행하기에 만족할만한 보증금을 제공후 정부에

지급보증을 제출함.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의 금액은 계약총액과 동일해야 함

- 하도급자 혹은 노무 및 자재공급자는 공사 종료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지급보증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시효는 하도급자 혹은 노무 및 자재공급자가 작업을 완료후 1년 이내로 한정함
- 단, 원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 및 자재공급자 혹은 하도급자와 계약을 맺은 2차 노무 및 자재공급자, 2차 하도급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재 및 노무를 제공한 마지막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2차 노무 및 자재공급자, 2차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직접 통지해야만 보증서에 의한 대금지급 청구권자가 될 수 있음
-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정산할 때 하도급자로부터 부채와 클레임을 완불했다는 각서인 애퍼데이빗(affidavit), 지불 영수증, 유치권 해제 증서 또는 지급보증을 제출받음
 - 애퍼데이빗(affidavit)은 모든 임금, 자재비용, 외주비용 등을 건설업자가 완전히 완불하겠다는 요지를 공증인 앞에서 선서하고 증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임
 - 하도급자가 애퍼데이빗(affidavit)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엄격한 형법상의 위증죄가 성립됨

- ‘애퍼데이빗’은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이 각서는 노임·자재비·외주비 등을 완불하겠다는 요지를 공증인(notary public) 앞에서 선서하고 서명하여 공증인의 증명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건설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 개인이 서명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사장 또는 중역들이 서명함. 지급 각서인 ‘애퍼데이빗’을 어기면 위증죄(perjury)로 처벌됨



[그림 2-3] 밀러법 보증범위

② 주정부의 하도급대금 보호(Little Miller Act)

- Little Miller Act는 연방정부의 Miller Act의에 근간을 둔 것으로 각 주(州)마다 그 적용범위가 상이함<표 2-5>
 - Alabama주의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공공사를 대상을 적용되고 있으나 5만 달러 미만 공사는 제외하고 운영되고 있음. 또한 공사금액에 따른 구분 없이 이행보증은 계약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지급보증은 계약금액의 50%를 보증하고 있음
 - Alaska주는 10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를 보증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에 따라 보증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행보증, 지급보증 공히 계약금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보증하며, 계약금액이 10~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일 때는 250만 달러를 보증하고 있음. 즉, 공사계약금액이 적을 경우 최소 50% 이상의 금액을 보증하고 있음
 - Arizona주는 전체 계약금액을 보증하고 있음
 - California주는 이행보증의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보증하며, 지급보증의 경우 2만 5천 달러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를 지급보증하며 계약금액의 전체를 지급보증하고 있음
 - Illinois주는 이행보증, 지급보증 모두 5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공사를 보증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으로 5천 달러 이상의 하도급 주정부 공사를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보증하고 있음
 - Virginia주는 이행보증, 지급보증 공통적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공사를

- 대상으로 보증을 시행하고 있지만, PQ공사는 보증에서 제외함
 - Washington주는 이행보증과 지급보증의 범위가 공통적으로 공사 계약 금액 3만 5천 달러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종합하면 각 주(州)마다 적용되는 리틀 밀러법은 밀러법에 근간을 두지만 적용공사범위가 전체 공사~10만 달러 이상의 공사,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40%~100%까지 적용범위가 다양함
 - 적용대상공사의 경우
 - ① 전체 연방정부공사에 적용(Arizona),
 - ② 2만 5천 달러 이상(California),
 - ③ 3만 5천 달러 이상(Washington),
 - ④ 5만 달러 이상(Alabama, Illinois),
 - ⑤ 10만 달러 이상(Alaska, Columbia, Maryland, Virginia)
 - ⑥ 하도급공사의 경우 5천 달러 이상(Illinois)
 - 보증금액의 경우 계약금액의 40%, 50%, 100%
 - 밀러법에서 규정하는 보증범위는 공사규모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음

<표 2-6> 미국 10개 주(州)별 Little Miller Act 비교

주(州)	이행보증	지급보증	비고																
Alab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공공공사, 계약금액 100% (5만 달러 미만 공사 제외) 10만 달러 이상 모든 공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공공공사, 계약금액 50% (5만 달러 미만 공사 제외) 모든 10만 달러 이상 공공공사 <table border="1"> <tr> <td>계약금액</td> <td>보증금액</td> </tr> <tr> <td>10만 달러 미만</td> <td>계약금액의 50%</td> </tr> <tr> <td>10만~50만 달러</td> <td>계약금액의 40%</td> </tr> <tr> <td>50만 달러 이상</td> <td>250만 달러</td> </tr> </table>	계약금액	보증금액	10만 달러 미만	계약금액의 50%	10만~50만 달러	계약금액의 40%	50만 달러 이상	25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기간: 계약정산(완료)후 1년 공지: 2차 하도급자는 작업완료후 45일 이내 수급인에게 공지해야 보증청구 가능함 시행: 작업완료후 90일 이내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기한: 계약완료후 1년 공지: 2차 하도급자는 작업완료후 90일 이내 수급인에게 공지해야 보증청구 가능함 								
계약금액	보증금액																		
10만 달러 미만	계약금액의 50%																		
10만~50만 달러	계약금액의 40%																		
50만 달러 이상	250만 달러																		
Alaska	<table border="1"> <tr> <td>계약금액</td> <td>보증금액</td> </tr> <tr> <td>10만 달러 미만</td> <td>계약금액의 50%</td> </tr> <tr> <td>10만~50만 달러</td> <td>계약금액의 40%</td> </tr> <tr> <td>50만 달러 이상</td> <td>250만 달러</td> </tr> </table>	계약금액	보증금액	10만 달러 미만	계약금액의 50%	10만~50만 달러	계약금액의 40%	50만 달러 이상	250만 달러	<table border="1"> <tr> <td>계약금액</td> <td>보증금액</td> </tr> <tr> <td>10만 달러 미만</td> <td>계약금액의 50%</td> </tr> <tr> <td>10만~50만 달러</td> <td>계약금액의 40%</td> </tr> <tr> <td>50만 달러 이상</td> <td>250만 달러</td> </tr> </table>	계약금액	보증금액	10만 달러 미만	계약금액의 50%	10만~50만 달러	계약금액의 40%	50만 달러 이상	25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작업후 90일 이내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에 의해 소송 제기 보증기간: 계약완료후 1년 기한: 지급중지(stop notice)후 6개월
계약금액	보증금액																		
10만 달러 미만	계약금액의 50%																		
10만~50만 달러	계약금액의 40%																		
50만 달러 이상	250만 달러																		
계약금액	보증금액																		
10만 달러 미만	계약금액의 50%																		
10만~50만 달러	계약금액의 40%																		
50만 달러 이상	250만 달러																		
Arizo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계약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계약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작업후 90일 이내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에 의해 소송 제기 보증기간: 계약완료후 1년 기한: 지급중지(stop notice)후 6개월 																
Califor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액의 50%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만5천 달러 이상 모든 공공공사, 계약액 전체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작업완료 혹은 착공후 120일 이내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한: 작업완료후 6개월 공지: 작업완료후 180일 이내에 정부에 통지해야 하며 추가 10일 이후 계약자에게도 통지 																
Columb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 달러 이상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만5천 달러 이상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작업완료 후 90일 이후 기한: 1년 공지: 2차 하도급자는 작업후 120일 이내 원도급자에게 공지 																
Illino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만 달러 이상 주정부공사, 5천 달러 이상의 하도급 주정부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만 달러 이상 주정부공사, 5천 달러 이상의 하도급 주정부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작업완료후 90일~1년 기간: 작업완료후 90일~1년 공지: 2차 하도급자, 노무 및 자재 공급자는 작업완료후 90일 이전에 대금 미지급 사실을 원도급자에게 공지해야 만 보증대상에 포함됨 																
Mary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액 10만 달러 초과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액 10만 달러 초과 공사, 50%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작업완료후 90일 이후 기한: 1년 공지: 2차 하도급자는 작업후 120일 이내 원도급자에게 공지 																
New Y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작업완료후 90일~1년 기간: 작업완료후 90일~1년 공지: 2차 하도급자, 노무 및 자재 공급자는 작업완료후 90일 이전에 대금 미지급 사실을 원도급자에게 공지해야 만 보증대상에 포함됨 																
Virgi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 달러 이상 공사 대상이지만 PQ공사는 보증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 달러 이상 공사 대상이지만 PQ공사는 보증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작업완료후 90일~1년 기간: 작업완료후 90일~1년 공지: 2차 하도급자, 노무 및 자재 공급자는 작업완료후 90일 이전에 대금 미지급 사실을 원도급자에게 공지해야 만 보증대상에 포함됨 																
Washing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계약금액 3만5천 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계약금액 3만5천 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작업완료후 90일 이후 기한: 1년 공지: 2차 하도급자는 작업후 120일 이내 원도급자에게 공지 																

③ 재하도급대금 지급보증⁷⁾

- 무능력 하도급자를 배제하기 위해 밀러법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을 통해 하도급자에게 충실한 계약이행과 재하도급자 보호 등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입찰 전에 하도급자에게 보증서를 요구하여 자격있는 하도급자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하도급자의 자격을 일정수준 검증할 수 있어 부실한 하도급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가 재하도급의 지급보증을 거부할 경우 하도급자의 변경사유가 될 수 있음(캘리포니아의 하도급거래공정거래법 4108조)

2.2.2 미국의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 종합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미국의 Payment Bond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으로 본 절에서는 1935년에 재정되어 약 80여년의 역사를 갖는 미국의 밀러법의 지급보증제도의 고찰 및 분석을 통해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음

7) 건설교통부,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 p. 86. 참조

- 미국은 원도급자가 원도급 이하의 하도급자, 노무 및 자재 공급자를 포괄하여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보증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주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건설보증은 원하도급 사이 책임있는 시공 및 대금지급을 상호 약속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음. 즉, 미국 밀러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그 하부의 2차 하도급자 노무 및 자재 공급자를 하나의 unit으로 묶어 원도급자가 전체 공사 및 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였음
- 이러한 원도급자의 역할은 우리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즉,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음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미국의 Miller 법에서 규정하는 Payment Bond의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시행에 앞서 미국과 다른 문화 즉, 국내는 미국의 애퍼데이빗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시행에 논란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국내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향후 시행예정인 임금지급보증을 통해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임금노동자 등의 보증이 이뤄짐에 따라 애퍼데이빗과 같은 하수급인의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으로 위와 같은 효력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2.3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의 법적 타당성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에 대한 법률관계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해 수급인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재하도급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 및 장비대여업자까지도 포괄적으로 보증함으로써 공사 완성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임

- 이처럼 직접적인 권리의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관계가 형성되는 제도로써 하도급자의 보호 및 안정적인 건설공사의 완료를 위한 하도급대금지급제도가 있음
 - 하도급대금지급제도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불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일정 요건이 발생할 경우 직접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임.⁸⁾

- 하도급대금지급제도는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사적자치 원칙(내지는 계약자유의 원칙) 및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공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음(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 사적 자치권(계약자유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및 원사업자가 침해받는 계약의 자유보다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이와 하도급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재산권 제한의 정당한 근거가 있다할 것이다...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3. 5. 15.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 즉, 하도급대금지급제도의 경우 하도급계약 당사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직접적인 권리 의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바, 이는 결국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직접 계약 당사자간이 아니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같은 규정에 의해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하도급자를 보호하며 발주자의 공사 완성의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 하도급대금지급제도와 동일한 맥락으로 재하도급자, 자재 및 장비대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자재 및 장비, 기술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이 수급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수급인과 재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 및 장비대여업자)의 포괄보증은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음
-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재하도급자, 자재 및 장비대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수급인이 침해받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한 보증책임관계보다 재하도급자, 자재 및 장비대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공사대금에 대한 포괄보증을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에서 수급인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재하도급자·건설기계대여업자·자재 및 장비대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건설공사 완료의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수급인이 보증함으로써 성공적인 공사완료를 위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포괄적으로 보증하여 궁극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지급제도와 동일한 맥락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하도급대금지급지급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적 측면보다 제도의 실효성,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최소화하는 논리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의 목적물을 적기에 인도하지 못했을 경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적합할 것임

3.1 단계별 건설공사 보증

- 일반적으로 보증이란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며, 주된 급부의 이행이 없으면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을 말하는바,⁹⁾ 건설보증은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발주자와 건설업체 및 보증기관 3자간의 채권·채무 및 구상채권·채무 관계를 말함¹⁰⁾
-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권익 보호 및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각 건설업체에게 공사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으로서 보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음
-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건설산업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수급인의 경영상화 악화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 체불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9) 지원립, 「민법강의」, 홍문사, 2012, 1205면.

10) 김명수 외,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7, 21면.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 밖에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되었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제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¹¹⁾한 상태임
- 이 밖에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자인 건설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건설수요자)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게 공사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으로서 보증책임을 규율하고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증제도로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금금보증, 하도급보증 및 그 밖의 보증¹²⁾(인·허가보증, 자재구입보증, 대출보증, 납세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재산상의 의무이행 관련 보증 등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제56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경우 보증의 형태로,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보증보험의 형태로 취급하고 있음
-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의 <표 3-1>과 같음

11)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75호.

1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보증을 말함

<표 3-1>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보증 종류	보증내용	보호대상자	비고
입찰보증	공사 등의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 보증	발주자	
계약보증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 보증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이행보증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손해배상보증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 보증	발주자, 수급인	
하자보수보증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 보증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선금금보증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 보증	선금 지급자 (발주자 등)	
하도급보증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보증	수급인	
포괄대금지급 보증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관련 보증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장비대여업자 및 자재공급업자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금지급 보증	건설기계 대여업자	
그 밖의 보증	인·허가보증, 자재구입보증, 대출보증, 납세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재산상의 의무이행 관련 보증		임금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 이러한 건설공사 보증을 건설공사 단계별로 적용할 경우 다음의 <표 3-2>와 같음

<표 3-2> 건설공사 단계별 보증의 적용

입찰 공고		
입찰		입찰보증(입찰금액의 15% 이상): 입찰 후 계약하지 않을 경우
도급 계약	원도급계약	계약보증(계약금액의 15%) 공사이행보증(계약금액의 40%) 차액보증
	선금 지급	선금금보증(선금액과 이자분): 기성금 지급 후 공사실적 여부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자재구입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등
준공 검사		하자보수보증(공종별로 상이)
공사대금 지급		

3.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3.2.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현황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라 함은 예측하지 못한 수급인의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한 채불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도급계약시에 하도급계약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수급인이 발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28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주요 내용¹³⁾

① 보증서 교부시기 및 발급기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되어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주요 내용은 상기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개요”의 내용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종광·박승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 건설정책리뷰 2012-12,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2를 참고하기 바람.

수급인은 늦어도 하수급인이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4-가)

○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보증은 현금 또는 다음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함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②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④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⑥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⑦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⑧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용의 변경

○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함(『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4-나)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미 보증한 사업자와 합병을 하거나 상속,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동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금

지급보증의무 대상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사업자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승계당시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4-다)

- 하도급계약 체결후, 수급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의무가 면제된 수급인이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4-라 및 마)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규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면제의 범위는 약간 차이가 있음
 -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①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②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¹⁴⁾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위반시 제재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각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함
 -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제81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제82조) 및 건설업의 등록말소(제83조)를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정조치(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과징금 부과(제25조의3),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제30조)을 규정하고 있음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4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2.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문제점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교부율 저조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¹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¹⁶⁾ 원·하도급간의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무화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은 거의 의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행위는 담보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 계약단계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해 하도급법과 건산법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이 저조함
 - 지급보증서 대상공사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의 경우 공공공사 41.4%, 민간공사 49.1%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15)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표 3-3> 하도급 공사 지급보증서 교부율(지급보증서 대상공사에 한함)

(단위 : 공사건수, (%))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대규모	66.7%	28.6%
중규모	37.4%	51.0%
소규모	43.3%	46.9%
전 체	41.4%	49.1%

출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보고서(2012), p. 125.

- 하도급공사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조사결과, 지급보증서 면제 업체를 제외한 순수 지급보증서 교부 대상 수급인중 지급보증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9.7%로 조사되었음. 또한, 지급보증서를 발급은 하였으나 실제 교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업체가 15.9%, 기타가 30.9%로 전체의 93.0%업체가 하도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며, 계약 보증이행을 제출하지 않아 지급보증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7.0%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제고를 위해서 수급인의 지급보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의견으로는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 교부대상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유로 조사되어 전문건설업체 스스로 지급보증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서로 신뢰에 의해 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순이고, 그 이외 절차가 복잡하거나 수급인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음 (<표 3-11> 참조).

<표 3-4>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원사업자가 교부 거부	140(29.7)
지급보증서 발급은 되었으나 실제 교부되지 않음	75(15.9)
당사가 계약 보증 이행을 미제출	33(7.0)
기 타	146(30.9)
합 계	394(100.0)

출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보고서(2012), p. 125.

- 이와 같이 전문공사의 하도급시장에서는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게다가 대부분 전문건설업체는 수급인이 지급보증 면제 대상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의 부적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도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함

- 이러한 제 규정은 경영상태가 우수한 신용평가 A 등급 이상의 업체
 는 부도위험이 낮으므로,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공사이행도중 신용등
 급 A 이하로 강등될 수 있으며, 나아가 아래의 <표3-12>의 경우와
 같이 신용평가 A 등급의 업체도 부도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할 수
 있음

<표 3-5> 100대 건설업체 중 구조조정 현황

시평 순위	회사명	유형	개시일자	비고
13	쌍용건설	워크아웃	2013.03.04	
16	금호산업(주)	워크아웃	2010.01.06	
28	벽산건설(주)	법정관리	2012.07.03	
29	풍림산업(주)	법정관리	2012.05.10	2013.04.04 종결
33	신동아건설(주)	워크아웃	2010.10.25	
35	남광토건(주)	법정관리	2012.08.09	
37	에스티엑스건설(주)	법정관리	2013.05.08	
38	극동건설(주)	법정관리	2012.10.11	
40	(주)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2011.07.12	
42	고려개발(주)	워크아웃	2012.12.12	
43	진흥기업(주)	워크아웃	2011.02.24	

시평 순위	회사명	유형	개시일자	비고
49	한일건설(주)	워크아웃	2010.07.05	
52	남양건설(주)	법정관리	2010.12.27	
53	(주)삼 호	워크아웃	2009.01.29	
54	엘아이지건설(주)	법정관리	2011.04.01	
67	(주)동일토건	워크아웃	2011.01.06	
71	우림건설(주)	법정관리	2012.11.29	
79	동문건설(주)	워크아웃	2009.01.29	
83	(주)신일건업	법정관리	2012.11.13	
84	범양건영(주)	법정관리	2012.06.26	
89	(주)중앙건설	워크아웃	2010.09.24	
98	(주)삼환까무	워크아웃	2012.07.06	

- 결국 이러한 제 규정은 “예측하지 못한 수급인의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한 체불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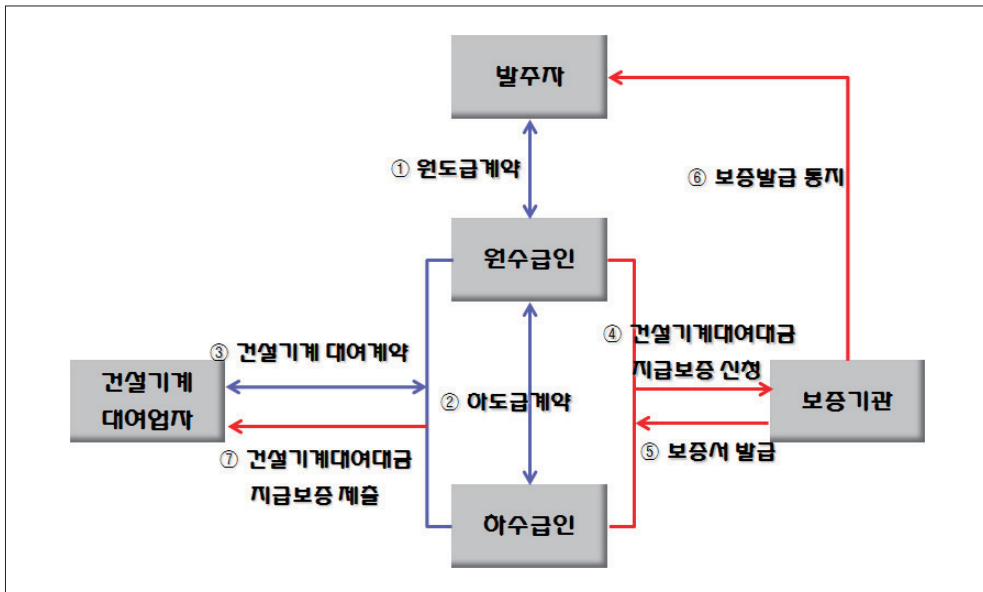
3.3.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현황

- 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고의 부도·잠적 등으로 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되었음

(1) 운영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보증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지시 발주자, 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사후정산 할 수 있음
- 보증금액의 계약기간 4개월 단위로 적용하며, 보증서를 발급 및 해지한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 보증서에는 발급연월일, 건설기계 대여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계

약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함



[그림 3-1]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

(2) 지급보증 발급 면제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3.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포괄대금지급보증서 제출시 제외함(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2항)

(3) 처벌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81제4호)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82제1항 제8호)

(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¹⁷⁾

①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 0.41%
 - 건축공사 : 0.07%
 - 산업·환경설비공사 및 조경공사 : 0.13%

②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구 분		요 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56%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0.49%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랑·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0.39%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8%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1%

③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요율
- 적용요율

17)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국토해양부고시 2013-331호

구 분		요 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43%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0.4%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0.31%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3%
E그룹	A그룹 ~ D그룹 이외의 공사	0.09%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①, ③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함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3.3.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문제점

(1) 보증대상범위 과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의 경우 대상범위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포괄대금지급보증과 임금지급보증(도입 예정)이 공공공사에 한해 적용하는 것에 비해 보증 범위가 과도한 실정임.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간의 상호

지급보증 체계가 불안정하며, 사후정산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

- 상호지급보증 체계가 하도급을 주로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계에 그 리스크가 집중되어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사의 원도급사에 대한 계약 이행 보증은 철저히 이뤄지고, 하도급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안정한 상황임
- 하도급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이 일괄적으로 시행되면 공사대금 전달체계에 있어 리스크가 하도급 전문건설사에게 집중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 정착되면 보증건수가 통상적으로 200,000건 이상 늘어나, 보증 발급 업무량 및 보상업무의 폭증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운영을 위한 간접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보증기간의 부적합

- 건설기계보증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준용해 임차기간이 4개월 이하이면 임차액 전액, 4개월 이상이면 4개월분의 임차료를 보증금액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건설기계 대여 기간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수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도 60일 이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개월 이내에 대금수령이 가능해, 사실상 임대차계약금액 전액을 보증하는 것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달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계약기간이 수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어 보증기간은 2개월로 설정하면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보증금액으로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보증기간의 하한선이 없어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는 법의 취지와 상충되고 있음

(3) 보증면제대상의 부적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면제 대상은 ①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불, ②건설업체의 회사채 등급이 A 이상, ③1건 임대계약 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이 면제됨
-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신용등급이 이에 해당되기는 사실상 어려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 따른 면제업체 비율¹⁸⁾과 비교했을 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8) 전체 하도급공사 중 36% 이상이 면제대상임

3.4 임금지급보증

3.4.1 임금지급보증의 현황

(1) 개요

- 최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특히,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건설공사의 최하위 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업종별 임금 체불 현황을 비교하면, 제조업이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20.8%로 금액은 245,174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6> 업종별 임금 체불 현황

(2012년도 현황)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금액(백만원)	383,822	245,174	152,550	395,620
비율	32.6%	20.8%	12.9%	33.7%

※ 기타 : 전기, 가스 및 수도업, 도소매 및 음식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표 3-7> 건설업 임금 체불 현황

(2012년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발 생		처리완료		처리 중	
건수	체불금액	건수	체불금액	건수	체불금액
35,047	245,174	33,532	232,863	1,515	12,312

* 출처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재인용

- 정부는 건설업체의 부도 및 파산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적기지급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원·하도급자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증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 추진 중에 있음
 - 국회에서도 건설공사의 최하위 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로써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지급보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발의·계류중임(2013년 2월 4일 강석호 의원 대표 발의)
- 또한 고용노동부 역시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임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¹⁹⁾한 상태임

19)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75호.

<표 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임금보증제도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를 위해 고용되는 건설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p> <p>② 제 1항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p>③ 제1항의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2항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다. 또한,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 제2항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발주자 및 원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금 지급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반드시 이를 건설공사의 금액에 포함시키야 한다.</p> <p>⑥ 원수급인은 제5항에 따른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신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금액을 그 원수급인 및 그가 해당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하수급인에게 노무비율에 따라 배분한다.</p>

현행	개정안
	<p>⑦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⑧ 그 밖에 보증대상, 보증금의 신청과 지급, 보증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 이러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는 건설공사 수행시(민간공사, 공공공사 포함) 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 즉 수급인 혹은 하수급인은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면 수급인 혹은 하수급인에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보증서를 발행한 보증기관으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궁극적으로 임금지급보증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고, 처벌조항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운영 및 절차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각자에게 고용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함. 단,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임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수급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임금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
-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각자에게 고용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보증은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라야 한다.
-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임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임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출받은 임금지급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계약 당사자는 임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⑥ 발주자 및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임금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3.4.2 임금지급보증의 문제점

- 정부(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의 취지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적기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
- 그런데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안은 하수급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와 무관한 내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임금지급보증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안 제7조의4 제3항에서 원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은 발주자뿐만 아니라 원수급인에게도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하수급인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임

- 이러한 입법안은 결국 하수급인에게 불필요한 업무에 따른 업무과다, 보증서 발급수수료 낭비 등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우게 하여 결국 그 피해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적기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임금지급보증제의 취지에 맞는 입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5 총 합

- 본 절에서는 국내외 하도급대금관련 지급보증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임금지급보증, 미국의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을 비교하였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의 저조,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의 부적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① 보증대상범위의 과다, ② 보증기간의 과다책정, ③ 보증 면제대상의 협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임금지급보증(안)은 하수급인의 보증서를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동일한 대상에 개별보증과 포괄보증이 중복 적용될 수 있어 제도 운영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각각의 보증에 대한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표 3-9> 하도급 데금과 관련된 보증 비교

구 분	하도급데금 지급보증	포괄데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데금 지급보증	임금지급의 보증	임금 및 자재데금 지급보증 (미국)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 • 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 • 최저가격찰제 대상공사중 전년도 낙찰률 하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 • 민간공사 (건설기계대여데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사 • 공사계약금액 \$100,000 이상
보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과 계약체결한 하도급자 • 하수급인과 계약체결한 재하도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과 계약체결한 하도급자 - 건설공사용 부품제자, 납품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 • 하수급인과 계약체결한 재하도급자(2차 하도급자) - 건설공사용 부품제자, 납품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과 계약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자 • 하수급인과 계약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에 고용되는 건설근로자 • 하수급인에 고용되는 건설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과 계약체결한 하도급자 - 근로 공급자 - 자재 공급자 • 하수급인과 계약체결한 재하도급자(2차 하도급자) - 근로 공급자 - 자재 공급자
보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공사기간과 기성주기에 따라 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200만원 초과분 (공사기간에 따라 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 ~ \$1,000,000: 50% • \$1,000,000 ~ \$5,000,000: 40% • \$5,000,000 이상: \$2,500,000
보증서 교부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대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
보증무자 제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하수급인: 재하도급) • 하도급 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 • 원도급 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 하수급인 • 건설기계 대여 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 및 하수급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 • 원도급 계약시
보증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58% ~ 0.07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하도급산출내역서 구분 요율 적용 고시(국토해양부고시 2013-33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보증(이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보증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보증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보증(이행보증)

4.1 포괄대금지급보증의 일원화 방안

- 건설하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대금관련 개별 보증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 개별보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등을 보호하기에 한계점을 안고 있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경우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거부 등으로 인한 교부율이 저조하며, 보증면제대상 인 신용등급 A일 경우에도 부도가능성이 높아 면제대상범위 설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는 공공공사를 포함한 민간공사까지 보증하고 있어 보증범위의 과다하며, 보증기간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상한선도 존재하지 않음. 또한 보증면제대상이 너무 협소하여 효율적 운영에 한계를 갖고 있음
 - 임금지급보증의 경우, 하수급인의 보증서를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 보증하는 제도인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통해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자재 및 장비 대여대금과 임금지급까지도 일괄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제도와 건설근

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등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특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그 적용대상에 있어 중복 보증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포괄대금지급보증 모두 보증범위에 속해 동일대상에 보증제도가 중복으로 존재하는 실정임

- 각 개별보증은 1 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수행단계 및 계약건별 수차례 보증이 이루어져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1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임금지급의 보증(향후 시행 예정)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보증이 동일대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그 운영 및 절차상 막대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는 결국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 또는 건설업자에게 법률의 해석 및 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보호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중인 하도급대금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따라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하도급대금관련 지급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 2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향후

임금지급보증)을 1건의 건설공사에 하나의 포괄대금지급보증으로 통합·운영하여야 함

- 각 건설공사마다 적용되었던 건설사 및 관련 부처의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및 보증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각 건설산업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4.2 포괄대금지급보증의 확대 방안

4.2.1 적용대상 확대

- 본 절에서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정한 공사범위 설정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상공사의 범위, 낙찰률, 보증금액 범위 등을 분석함. 분석한 데이터²⁰⁾는 조달청 및 이외 공공기관의 당해 연도 공공공사 발주 현황임

(1) 포괄대금지급보증 현황

① 전체 공공공사 현황

- 2010년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의 연도별 조달청 및 이외 공공공사 발주(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공종만 분석하였음) 현황은 <표

20)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실태분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본 연구원의 협조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제공하였음

4-1>과 같음. 조사기간 동안 2012년의 공공공사 발주건수가 66,384건으로 가장 높으며, 전체적인 공공공사 건수는 약 5만 3천 건에서 6만 6천 건 정도의 분포를 보임

<표 4-1> 조달청의 연도별 공공공사 발주 현황

(단위: 년, 건수, 10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5.31
건 수	53,339	61,410	66,384	28,875
금액(10억원)	15,988	14,352	14,633	6,389

② 최저가낙찰제공사 현황

- 포괄대금지급보증 범위의 기준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였음
 - 발주건수의 경우 2010년에 95건, 2011년 81건, 2012년 67건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총 공사금액은 2011년 2조 6,180억원으로 조사기간중 최대 공사계약 금액을 나타냈으며, 2012년의 경우 1조 8,9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72%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평균 낙찰률은 2010년 최저 70.8%에서 2013년(5월말까지의 현황) 75.1%로 최고 평균 낙찰률로 대체적으로 70~75%의 평균 낙찰률의 분포를 보임

<표 4-2> 연도별 3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공사 발주 현황

(단위: 년, 건수, 10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5.31
건 수	95	81	67	29
금액(10억원)	2,507	2,618	1,890	926
평균낙찰률(%)	70.8%	72.2%	74.3%	75.1%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주공종별로 구분한 결과, 토목공사업이 전체 조사기간동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축공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종의 분포는 미미함

- 토목공사업의 경우, 2010년에 74건으로 당해 연도 해당 공사중 77.9%를 차지하며, 2012년은 가장 낮은 53.7%를 나타내고 있음

<표 4-3> 연도별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주공종별(단위: 년, 건, %)

구 분	2010	2011	2012	2013.5.31
토목건축공사업	1 (1.1)	8 (9.9)	5 (7.5)	0 (0.0)
토목공사업	74 (77.9)	50 (61.7)	36 (53.7)	21 (75.0)
건축공사업	16 (16.8)	21 (25.9)	25 (37.3)	7 (25.0)
조경공사업	2 (2.1)	0 (0.0)	1 (1.5)	0 (0.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 (1.1)	1 (1.2)	0 (0.0)	0 (0.0)
준설공사업	1 (1.1)	1 (1.2)	0 (0.0)	0 (0.0)
합 계	95(100.0)	81(100.0)	67(100.0)	28(100.0)

○ 또한 3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계약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가 제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12년의

경우 모든 대상공사가 제한경쟁으로 계약되었음

<표 4-4> 연도별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계약방법별(단위: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5.31
일반경쟁	1	1	0	0
제한경쟁	94	80	67	29
총합계	95	81	67	29

- 조사기간동안 최저가낙찰제공사의 특성은 제한경쟁을 통한 토목공사 업이 주공종으로 낙찰률이 70% 초반인 것으로 분석됨

③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 공사 현황

- 개략적인 대상공사건수를 파악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괄대금지급 보증 적용기준을 국토부 고시에서 고시하는 것과 같이 토목, 건축, 기타 공사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공공공사의 낙찰률의 하위 5%의 낙찰률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건 수를 산정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에 해당하는 낙찰률 및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 2010년의 낙찰률 하위 5%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60.034%이며, 2011년의 낙찰률 하위 5%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65.629%, 2012년의 낙찰률 하위 5%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69.368%, 2013년은 66.369%인 것으로 분석됨

- 분석된 연도별 낙찰률을 기준으로 다음 해의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해당 공사 건수는 2011년은 2건, 2012년은 0건, 2013년은 3건으로 분석되었음²¹⁾

<표 4-5> 연도별 전체 공공공사중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5% 공사건수
(단위: 연도, 건수, %)

구 분	2010	2011	2012	2013.5.31
해당건수	-	2	0	3
전년도 하위 5% 낙찰률	-	60.034%	65.629%	69.368%

※ 조사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이므로 2010년의 전년도 하위 낙찰률 5%와 그에 해당하는 공사건수가 없음

- 또한 건산법에서 규정하는 전년도 낙찰률 하위 10%의 해당 낙찰률과 공사범위도 하위 낙찰률 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즉, 하위 낙찰률 조정으로 공사 범위를 조정하기에는 그 해당 공사건수가 너무 적은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전년도 하위 낙찰률 10% 이내의 공사 범위에 속하는 공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범위가 협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 2010년의 낙찰률 하위 10%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62.640%이며, 2011

21) 2013년 5월 말까지의 실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대상공사 건수가 2건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종별 구분없이 해당 낙찰률만으로 분석하여 해당건수가 3건으로 도출되어, 실제 보다 1건 많은 수치를 보였음

년의 낙찰률 하위 10%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67.827%, 2012년의 낙찰률 하위 10%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0.755%, 2013년은 69.246%인 것으로 분석됨

- 분석된 연도별 낙찰률을 기준으로 다음 해의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해당 공사 건수는 2011년은 3건, 2012년은 1건, 2013년은 4건으로 분석되어 하위 낙찰률 5%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표 4-6> 연도별 전체 공공공사중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10% 공사건수
(단위: 연도, 건수, %)

구 분	2010	2011	2012	2013.5.31
해당건수	-	3	1	4
전년도 하위 10% 낙찰률	-	62.640%	67.827%	70.755%

※ 조사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이므로 2010년의 전년도 하위 낙찰률 10%와 그에 해당하는 공사건수가 없음

- 분석결과,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의 취지인 건설공사의 최하부에 위치한 재하도급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부품 납품업자를 보호하기에는 대상공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 범위 확대

- 2012년 국토해양부 고시된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구분에 따른 공사현황은 전년도 하위 낙찰률 5%의 경우 해당 공사 건수는 2건 이며(상호 직접 지급 합의로 인해 시행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전년도 하위 낙찰률 10% 이내에 해당하는 공사 건수도 하위 낙찰률 5%와 유사함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전년도 하위 낙찰률 10% 이내의 공사 범위에 속하는 공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 또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대상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최근 정부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2013.6.14.)” 발표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합심사제도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적용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할 것임
-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수급인과 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재하수급인, 장비 대여업자 및 자재 공급업자의 공사대금 보증 대상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은 수급인에게 과도함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재산권 보장 위배 및 계약자유 원칙 위배 등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도 사실임
- 그럼에도 포괄대금지급보증의 입법 취지,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대상 범위를 민간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 공공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일부 소수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재하수급인, 장비 대여업자 및 자재 공급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용대상공사를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표 4-7> 포괄대금지급보증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대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이하“포괄대금지급보증”이라 한다)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대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이하 “포괄대금지급보증”이라 한다)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4.2.2 포괄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적용기준 마련

(1) 보증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관련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개별 하도급계약 등의 보증금액의 합계가 포괄대금지급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하여야 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은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지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²²⁾’,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²³⁾’과 달리 그 적용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건설산업기본법」상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95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적용기준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22) 국토해양부 고시 2010-956호.

23) 국토교통부 고시 2013-331호.

○ 적용요율

공사규모		요율
50억원 미만		0.070%
50억원 ~ 100억원 미만		0.069%
100억원 ~ 300억원미만		0.064%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5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58%
턴키·대안공사		0.073%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에정금액을 말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적용기준

①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종합 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 보증서발급금액: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요율
 -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1%
 - 건축공사: 0.07%
 - 산업·환경설비공사 및 조경공사: 0.13%

②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요율

구분		요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56%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	0.49%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39%

	가스시설시공 1종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8%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1%

③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하도급공사비×요율
- 적용요율

구분	요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43%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	0.4%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0.31%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3%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9%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①, ③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처럼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공사원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확대를 위한 법제화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4-8> 포괄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1안)**

현 행	개정안
<p>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생략)</p> <p>1. 하도급대금</p> <p>2.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등(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한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③ ~ ⑤ (생략)</p>	<p>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평균 등급업체의 평균 보증요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명시하고 그 명시된 금액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2) 보증 수수료 확보 방안

-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의 경우 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적용되고, 공사원가에 반영되다 보니 낙찰률과 연동되어 저가낙찰시 보증 수수료도 동시에 감소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 부담감과 그에 따른 수수료까지 감액되어 부족한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보증이 1건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수행단계 및 공사 계약건별로 수차례 보증이 이루어져 수수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적, 행정적, 경제적 손실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함
- 또한 여러 단계의 보증은 보증서 발급 등의 번거로움과 복잡함으로 인해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보증담보 책임자(수급인)가 보증서를 발급을 꺼려하고 보증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음
- 포괄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수급인이 수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4-9> 포괄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2안)

현 행	개정안
<p>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 대금지급보증) ① (생략)</p> <p>1. 하도급대금</p> <p>2.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등(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③ ~ ⑤ (생략)</p>	<p>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 대금지급보증) ①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평균 등급업체의 평균 보증요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명시하고 그 명시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수급인이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4.2.3 보증 면제대상(회사채평가 A 이상) 조정

-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은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음의 면제요건을 만족해야 함(건설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p>수급인이 ②의 ㉠~㉢의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급인이 재하도급한 계약의 하도급 대금, ㉡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 면제범위중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하도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도 포함되고 있으나, 공사이행도중 신용등급 A 이하로 강등될 수 있으며, 실제 최근 일부 건설사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공사도중 강등된 사례가 있음
- 정부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2013. 6.14)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신용등급이 A등급이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 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 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면제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포괄 대금지급보증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사채 평가 A 이상인 현행 면제대상업체도 포괄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면제 범위 조정을 통해 공사도중 수급인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하도급관련 공사대금 체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임

<표 4-10> 포괄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조정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제34조의3(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 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의3(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 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제28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4.2.4 보증금액 및 보증비율 조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선급금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전체를 지급보증하며(공사기간과 기성주기에 따라 달라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계약금액 200만원 초과분(공사기간에 따라 달라짐)에 한해 보증하고 있어 공사금액의 20%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 범위보다 그 적용범위가 넓은
- 이것은 현재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범위가 300억 이상 최저가낙찰공사를 대상일 경우를 감안하면 그 보증금액의 범위가 작지 않지만 향후 보증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증금액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할 것임
- 미국 임금 및 자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연방정부의 경우 공사 계약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의 40~50%, 심지어 100%를 보증하는 등 공사 규모에 따라 보증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국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될 경우 현재의 계약금액 20%의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공사기간 및 기성주기에 따른 보증범위를 차별화하는 등의 보증금액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미국의 밀러법과 같이 공사금액에 따라 보증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건설공사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 납품업자 등 다양한 건설주체가 참여하여 건설공사가 진행 및 완성되는 것임
- 이와 같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여러 단계의 참여자를 종합건설업을 맡고 있는 수급인이 계획 및 종합관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함.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각 건설공사 단계 및 기성주기마다 적기에 공사대금의 지급이 담보되어야 함
- 전문건설업체는 수급인이 저가로 낙찰함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실견적 이하로 입찰금액을 산정하며 이러한 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은 인건비 절감, 공기 단축, 자재비 절감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만약 수급인이 도산을 하면 그 피해는 원도급업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도급업체와 자재 및 장비대여업자 등이 그대로 부담하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됨
-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위해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대금관련 지급보증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임금지급보증도 도입할 계획임

- 그러나 각 개별보증-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임금지급보증(시행 예정)-은 보증서 교부율의 미비, 면제 대상 범위의 부적합, 보증 범위의 과도한 설정, 각 보증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운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개별보증은 건설공사 수행시 1건의 공사에 공사 주체별, 공사단계별 여러 개의 보증서를 발급해야하는 행정상, 운영 및 관리상, 비용상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이루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1건의 공사현장에 1건의 포괄대금지급보증만을 적용하여 여러 개의 개별보증인 단일보증으로 일원화하여 (재)하도급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 및 장비대여업자 등 건설공사과정에 참여한 모든 건설산업 주체를 대금체불로부터 보호하여 원활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임
- 그러나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은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일부-전년도 낙찰률 하위 5%-에 한해 적용되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그 적용대상 공사 건수는 3건 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3건의 포괄보증 대상공사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인해 해당공사가 단 1건도 없는 실정으로 그 적용대상 범위의 조정이 필요함
- 포괄대금지급보증 시행을 위한 운영방안도 미비한 상황임. 포괄보증 범위 설정을 위해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구분에 따라 해당 낙찰률을 고시하는 등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하)도급 산출내역서에 포괄대금지급보증 반영을 위한 세부적 적용기준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미진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도급대금 관련 개별 지급보증-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임금지급의 보증(시행 예정)-과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분석을 통해 운영실태 및 미비점을 파악하여 포괄보증으로 일원화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로 일원화 및 확대를 위해 검토한 주요 내용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1) 하도급대금관련 지급보증을 포괄대금지급보증으로 단일화

- 현행 하도급대금관련 보증은 1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임금지급의 보증(향후 시행 예정)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보증이 동일대상에 대해 개별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 하도급대금 관련 개별보증의 운영 및 절차상 막대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1건의 건설공사에 하나의 포괄대금지급보증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각 건설공사마다 적용되었던 건설사 및 관련 부처의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및 보증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

-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하도급대금관련 지급보증들(하도급대금지급보증, 2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향후 임금지급보증)을 하나의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로 통합 운영함

2) 전체 공공공사로 대상범위 확대

- 정부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2013.6.14.)’에 의해 최저가낙찰제도 폐지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범위 재설정이 필요하며, 또한 실제 낙찰률과 상관없이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를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함

3) 보증 수수료 세부 적용기준 마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처럼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고시하며, 발주자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공사원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보증 면제대상(회사채평가 A 이상) 조정

-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수급인이 공사이행도중 신용등급 A 이하로 강등될 수 있어 회사채 평가 A 이상인 현행 면제대상업체도 포괄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함

5) 보증금액 및 보증 비율 재조정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될 경우 미국의 밀러 법과 같이 현재의 계약금액 20%의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공사기간과 기성주기 등에 따라 보증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관련 제도를 포괄대금지급보증으로 일원화하여 개별보증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건설공사의 완료를 위해 동제도의 대상공사를 현재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또한 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통해 추후 하도급 공사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상황에 의해 대금지급이 어렵게 됐을 경우 하수급인 및 그 하부단계의 건설참여주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 고 문 헌

1. 강운산(2011).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 평가 및 보완 방법.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공제조합(2012).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조합원 설명자료.
3. 건설교통부(2007).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4. 고용노동부(2011).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방안.
5. 김명수 외(2007),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6. 김홍수, 송병관(2001). 미국의 건설 보증에 대한 이해와 주요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 대한설비건설협회,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업무처리 요령.
8. 대한전문건설협회(2012). 2011년도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9. 박선구, 김태준(20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도입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0. 성은중(2011). 건설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1. 이상훈(2009.2). 미국공공공사사업의 건설보증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태, KICEM 제10권 제1호.
12. 이영환. 구분상(2008). 최저가낙찰제 건설현장의 실태분석과 제언.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3. 이의섭(2009). 포괄보증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4. 이의섭(2002). 공공공사 계약이행 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

설산업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5. 이의섭(1996). 선진국의 건설보증제도-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한국
건설산업연구원.
16. 이종광. 박승국(2012). 2012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도급대금지급보
증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7. 지원림(2012), 민법강의, 홍문사.
18. 최인호(2011).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정부조달계약의 공공성과
하도급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법적 규율. 법합논의 제31권 제3호.
19. 한국건설관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통권 제47호 (2009. 2) pp.35-37.
20. 홍성준(2010).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에 있어 건설보증의 역할강
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논문.
21. Miller Act.:TITLE 40 > SUBTITLE II > PART A > CHAPTER
31 > SUBCHAPTER III > § 3131.

조달청 사이트

전문건설협회(2012).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http://en.wikipedia.org/wiki/Miller_Act

http://en.wikipedia.org/wiki/Little_Miller_Act

http://en.wikipedia.org/wiki/Mechanic's_lien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통계연보.

부 록

<부록 표-1> 포괄대금지급보증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대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이하 "포괄대금지급보증"이라 한다)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하도급대금</p> <p>2.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등(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무는 수급자가 제32조제4항에 따</p>	<p>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대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이하 "포괄대금지급보증"이라 한다)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하도급대금</p> <p>2.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등(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무는 수급자가 제32조제4항에 따</p>

현 행	개정안
<p>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p> <p><u><신 설></u></p> <p>③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 중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상응하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④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p>	<p>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평균 등급업체의 평균 보증요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명시하고 그 명시된 금액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 중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상응하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④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포괄대금</p>

현 행	개정안
<p>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⑤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보증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⑤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보증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부록 표-2> 포괄대금지급보증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 대상 등) 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 보증의 보증대상 등) ① 법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2. 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3.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4. 하수급인이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p>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 대상 등) 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 보증의 보증대상 등) ① 법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2. 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3.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4. 하수급인이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현 행	개정안
<p>6.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p> <p>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영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의 합계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하여야 한다.</p> <p>③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p>	<p>6.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p> <p>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영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해당의 <u>100분의 50(비율 조정)</u>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의 합계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하여야 한다.</p> <p>③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p>

현 행	개정안
<p>2. 제1항제3호 및 제6호: 4개월 동안의 건설기계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p> <p>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계약내용을 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⑥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이에 따른 대금 지급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⑦ 보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계약내용에 따라 개별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보증내용을 확정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⑧ 수급인은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지 제26호의2 서</p>	<p>에 해당하는 금액</p> <p>2. 제1항제3호 및 제6호: 4개월 동안의 건설기계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p> <p>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계약내용을 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⑥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이에 따른 대금 지급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⑦ 보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계약내용에 따라 개별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보증내용을 확정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⑧ 수급인은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 수 있</p>

현 행	개정안
<p>식에 따라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⑨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제7항에 따라 공시된 보증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그 보증내용에 누락 및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⑩ 보증기관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하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수급인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34조의3(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 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계획서(제28조제2항제5호 	<p>도록 관련 내용을 별지 제26호의2 식에 따라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⑨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제7항에 따라 공시된 보증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그 보증내용에 누락 및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⑩ 보증기관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하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수급인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34조의3(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 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8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금을 직접 지급

현 행	개정안
<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확인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p> <p>② 수급인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한다는 계획서(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확인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p> <p>② 수급인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일원화 방안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중심으로 -

2013년 8월 인쇄

2013년 8월 발행

발행인 노재화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14층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3

